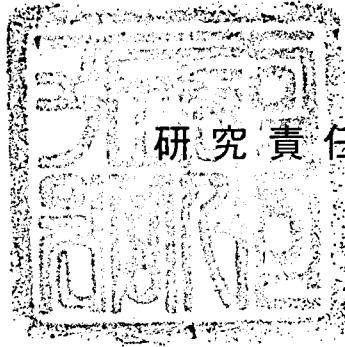


'89신진학자통일연구

南北韓 言語와 統一을 위한 研究

1989



研究 責任 者 : 최 호 철 (고려大)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統一 및 北韓 問題 新進學者 育成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研究結果 報告書 입니다.

本 研究는 南北韓 言語 異質化의 原因과 程度에 관한 分析을 통해 바람직한 南北韓 言語의 統一方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冊字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參考資料로 적극 活用되어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査 研 究 室

要約文

한 언어 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함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이 둘의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서로의 내용을 정밀히 고찰하여 그 실상과 벌어진 틈을 찾아내어야 하고, 그것이 수정과 조정 및 보완을 통하여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서법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검토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살피고 그의 통일 방안을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남한에서는 1933년의 통일안이 정부수립 후에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노릇을 하게 되어 사용되다가 1988년에 최초로 정부가 마련한 정서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용상 준수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1948년의 정서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기에 그 효용성은 없었으며 1954년의 정서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자모의 규정과 단어의 형태표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1966년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대폭 수정하여 붙여쓰는 방향으로 되었고 1988년의 정서법에서는 이것이 다시 완화되었다.

남북한 정서법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보다 더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또 띄어쓰기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이의 조정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원칙에 있어서 남북한이 형태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규정은 문맥상 표음주의를 근본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모에 있어서는 그 수와 이름, 순서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나는데, 자모의

수는 글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24자로 하고, 자모의 이름은 일관되게 ‘기옥, 니은, 디%, ‘식으로 통일하고 ‘쌍기옥, 쌍디%, ‘식으로 글자의 형태를 기준하여 부르고, 실용상에 있어서, 그.느.드 ‘식의 이름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자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음절단위로 모아쓰는 면을 고려하여 소리단위로 19개의 표제글자로 하여 남한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형태소의 표기에 있어 ‘(으)ㄹ’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않도록 하고, 한자음의 ‘매, 폐’는 ‘메,페’로 적어도 무방하겠으며,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는 한자의 본음을 적어 그 형태를 밝혀 적고, 변환 소리는 소리대로 적도록 함으로써 두음법칙을 표기에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어의 표기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대원칙의 정신에 맞게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남한의 규정이 더 일관된 면이 있다.

합성어의 표기는 사잇소리의 표기가 커다란 차이로 등장하는데, 현재의 상태에 크게 손대지 않은 범위에서는 고유어가 앞말로 된 때에 한하여 그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만 ‘ㅅ’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 무난하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호나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될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ㅂ’, ‘여’불규칙의 경우와 ‘하다’의 ‘하’가 줄 경우인데, ‘ㅂ’불규칙의 경우는 모음조화 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실발음을 인정하여 ‘우’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여’ 불규칙의 경우는 음운론적인 변이형태인 점을 고려하여 ‘하’ 이외에는 ‘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다’의 ‘하’가 완전히 준경우에 한해 준 대로 적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남북한의 띄어쓰기를 원칙, 체언류, 용언류, 그밖의 것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째, 원칙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단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예외적인 단서가 달랐고 그 결과 세부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의 조정이 필요하다.

(1)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태소만으로 범주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은 띄어쓰기 원칙의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또는 현상을 지시하는 말들은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에서 추구하는 일반대중의 편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체언류에 대한 검토에서의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었는데 남한에서 의존명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현재의 「한글맞춤법」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의 간결해지고 원칙이 일관될 것이다.

셋째, 「조선말규범집」에서는 제1장 제3항 1조와 4조의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의 제외한 나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수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목수정이 불가피하다.

넷째, 복합명사에 관한 「조선말규범집」에서의 조항은 「한글맞춤법」의 붙여쓰기 정신과 정신과 원칙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방향에서 「조선말규범집」은 만단위로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유명사에 관련한 「조선말규범집」의 띄어쓰기 조항은 「한글맞춤법」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용언을 검토한 결과 「한글맞춤법」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 쓰기는 남한과 북한의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용언에 관련한 조항은 간결해 져야한다.

여덟째, 「조선말 규범집」에서 제1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어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적하여 붙여쓴다”는 조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에 입각해 띄어 써야 한다.

아홉째,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조선말규범집」의 항목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글맞춤법」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둬으로써 「조선말규범집」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의 정서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비교 검토하였다. 정서법의 대원칙에 흐르는 형태주의와 단어별 띄어쓰기는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이 예외규정에 대한 고찰이 결국은 남북한 정서법 통일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실용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간략하고 일관된 규정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예외가 될수 있는 한 적은 쪽으로 귀일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1. 머리말.	3
2. 남북한 정서법의 변천.	4
2.1. 한글 맞춤법 통일안.	5
2.2. 남한의 정서법.	7
2.3. 북한의 정서법.	10
2.4. 요약.	14
3.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 검토.	15
3.1. 원칙.	16
3.2. 자모.	17
3.3. 형태소.	18
3.4. 파생어.	23
3.5. 합성어.	24
3.6. 어간과 어미.	26
3.7. 요약.	28
4. 남북한 띄어쓰기의 비교 검토.	30
4.1. 원칙.	31
4.2. 체언류.	33
4.3. 용언류.	39
4.4. 그 밖의 것.	41
4.5. 요약.	43
5. 맺음말.	45
〈참고문헌〉.	49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민족에게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 날이었고,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民族이 동족상잔이라는 참극을 겪은 날이었다. 남북으로 두 동강 난 한반도는 증오와 불신으로 40여년을 보냈으며, 우리 민족의 가슴에 통일의 염원은 양금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가로막힌 장벽은 갈 분야에서 남북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있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여러분야에서 남북은 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한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 예외일 수는 없다.

언어는 그 민족을 특정짓는 가장 代表적인 것이므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민족이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國土는 이미 갈라졌고, 언어는 지금 달라지고 있고, 민족은 아직 하나이다. 지난날 國土가 갈라짐은 막지못했지만 오늘날 언어가 달라짐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남북한의 實相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서 남북한의 정서법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정서법은 한 언어공동체의 문자 생활에서 중요한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분단 직후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실시되던 정서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다. 이 ‘통일안’은 1933년에 제정된 것으로 그 후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남한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이를 國家의 공인된 정서법으로 삼고 그간 일부 조정하여 사용해 오다가 1988년에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고시하였다. 北韓은 1948년의 ‘朝鮮語 신철자법’을 비롯하여 1954년의 ‘조선어 철자법’을 거쳐 1966년에는 ‘조선말 규범집’을 公布하였고, 그 후 일부 수정, 보완하여 1988년에 ‘조선말 규범집’을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하나의 언어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그 정서법의 내용에 있어서 남한은 單語의 形態를 적는 方法과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이라 하고 문장부호를 부록으로 두고 발음법은 따로 標準語 규정에서 처리한 반면, 북한은 單語의 형태를 적는 방법만을

‘맞춤법’이라 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발음법 등 4규정을 ‘규범집’으로 묶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서법이라 하면 그 範圍는 단어의 형태를 적는 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만으로 限定되므로 발음법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서법을 고찰함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살펴야 하겠지만 地面上의 제약으로 문장부호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남북한이 差異가 있으니 ‘맞춤법’이란 用語에 대하여 남한은 단어의 形態를 적는 법과 띄어쓰기를 다 포함한 내용인데 北韓은 띄어쓰기를 제외한 내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둘을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單語의 형태를 적는 법만을 ‘맞춤법’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에서 각기 공인한 정서법 가운데서 문장부호를 제외한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본고의 연구대상이 된다.

한 언어 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함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이것이 40여년의 斷切로 인하여 생긴 結果이고 보면 이들의 統一에 대한 노력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내용을 정밀히 고찰하여 그 實相과 벌어진 틈을 찾아내서 수정과 調整 및 補完을 통하여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서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고는 제2장에서는 변천과정을 제3장에서는 맞춤법을 제4장에서는 띄어쓰기를 비교, 檢討하여 그 統一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북한 정서법의 變遷

해방 직후 남한과 북한에서 表記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1933년에 제정된 표기법이 通用되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現在의 남북한 정서법의 母胎가 되는 이 표기법의 內容을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이후의 變遷內容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2.1.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가 1930년 12월 30일에 시작하여 1932년 12월에 원안의 작성을 마치고 두 차례의 檢討會議를 거친 다음 1933년 10월 19일 확정된 것인데, 1933년 10월 29일에 공표되었다. 이의 구성은 총론과 각론 7장 그리고 附錄으로 되어 있는데, 그 內容을 요약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론의 內容

전체 3조로 표기법의 原則과 표준어를 規定하고 있다. 표기법의 2대 원칙은 각 단어를 소리대로 적고 띄어 쓴다는 것이고, 그 단서로는 어법에 맞도록 하며 토는 붙여 쓴다는 것이다.

2) 자모의 內容

자모의 수는 24자로 하고, 그 順序와 이름을 정하고 위의 글자로 적을 수가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는 規定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중모음의 이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¹⁾.

3) 성음에 관한 것의 표기 內容

여기에서는 된소리, 설측음, 구개음화, ㄷ 받침 소리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한 형태소 안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고, 설측음은 르르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구개음화되는 것은 소리대로 적지 않고 形態를 밝혀 적도록 하였으며, 까닭없이 ㄷ받침으로 소리나는 것은 모두 ㅅ으로 적도록 하였다²⁾.

4) 문법에 관한 것의 표기 內容

먼저 체언과 토, 어간과 어미는 각각 그 形態를 밝혀 적도록 規定하였고, 용언에서 어간에 사, 피동 접사가 붙을 경우에도 그 形態를 밝혀 적도록

1)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ㆁ(티을)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ㅊ(쌍기역) ㅌ(쌍디귤) ㅍ(쌍비읍) ㅆ(쌍시옷) ㅊ(쌍지읒)

ㅈ ㅊ ㅋ ㆁ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2) 어깨, 어머하다, 아빠, 어찌하다, 흘러, 빨리, 얼른, 발이, 활이다, 짓밟다, 그릇, 무릇

하였으나, 변칙용언의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리고, 받침글자로는 종래에 써 오던 10개의 받침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ㄹㄱ), (ㄹㅁ), (ㄹㅂ)에 18개의 받침글자 ㄷ, ㅅ, ㅋ, ㅍ, ㅎ, ㅃ, ㅅㅅ, (ㄱㅅ), (ㄴㅅ), (ㄴㅎ), (ㄷㅅ), (ㄷㅌ), (ㄷㅎ), (ㄷㅎ), (ㅁㄱ), (ㅂㅅ)을 더하여 모두 28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파생어와 복합어의 표기에 있어서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것과 소리대로 적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두사가 붙을 때, 접미사중에서 명사 파생 접미사 ‘이, 음’, 부사 파생 접미사 ‘이’, 사. 피동 접미사 ‘이’,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를 제외한 자음으로 시작 되는 접미사, 그리고 ‘없다, 이다’가 붙을 때, 복합어에서 사잇소리가 나지 않거나 받침 다음에서 사잇소리가 날 때이며⁴⁾, 그 외는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⁵⁾.

5) 한자어의 표기 내용

여기에서는 한자음 表記를 規定한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를 ‘ㅌ’로, ‘ㅈ’자를 ‘ㅊ’자로, ‘ㅅ, ㅆ,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ㅈ, ㅊ, ㅆ, ㅊ’를 ‘ㅈ, ㅊ, ㅆ, ㅊ’로 ‘세, 제, 체를, 세, 제, 체로 ‘ㅁ, ㅂ, ㅍ’을 첫소리로 삼는 ‘ㅌ’를 ‘ㅌ’로, ‘ㄱ, ㅂ, ㅅ, ㅆ’를 ‘기, 비, 시, 치’로 ‘슈, 츠’를 ‘쉬, 취’로, ‘더, 도, 듀, 디, 데’를 ‘저, 조, 주, 지, 제’로, ‘터, 토, 튜, 테’를 ‘처, 초, 추, 체’로 적도록 한 것이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어두의 ‘나, 녀, 뇨, 뉴, 니, 네, 라, 료, 류, 리, 레’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어두의 ‘라, 로, 루, 르, 래, 뢰’를 ‘나, 노, 느, 내, 뇌’로 적도록 한 것과

-
- 3) 끓이, 발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맡기다, 먹이다, 돋우다, 잡히다, 우니, 이어, 하야니, 들어, 도와, 하여, 푸르러, 올라.
 - 4) 짓이기다, 먹이, 웃음, 굳이, 죽이다, 낚시, 덮치다, 늦추다, 답답히, 맡기다, 착하다, 부질없다, 움죽이다, 집안, 물새.
 - 5) 마개, 주검, 너무, 꼬트머리, 슬프다, 기러기, 발짚다, 미덥다, 우습다, 부삼, 나룻배, 좁쌀, 암개.
 - 6) 조녀→자녀, 사회→사회, 세계→세계, 북극→북극, 기차→기차, 취진→취재, 더금→저금, 턴다→천지.

속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그대로 적도록 한 것이다⁷⁾.

6) 약어의 표기 內容

본래의 말에서 줄어든 것은 줄어든 대로 적을 수 있으나, 따로 남는 자음은 그 윗말에 받침으로 적되 ‘하다’의 ‘ㅏ’가 준 것은 사이에 ‘ㅎ’을 놓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⁸⁾.

7) 띄어쓰기의 內容

이것은 총론에 밝힌 原則을 따르되, 보조용언이나 의존명사는 그 윗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으며, 수를 우리글로 적을 때는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이상에서 살핀 1933년의 표기법은 해방 전까지 두 번의 개정, 보완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1933년 3월 1일이며, 두번째는 1940년 6월 15일이다¹⁰⁾.

2.2. 남한의 정서법

해방 직후인 1946년 9월 8일에 종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 30항에서 중간에 모두 쓰게 한 사이시옷을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만 받침으로 쓰도록 바꾸어 이전의 규정대로 되돌리고, 보조용언과 의존명사는 붙여 쓰도록 한 제62, 63, 64항을 삭제하여 띄어 쓰도록 하였고, 제10항과 제48항, 제61항에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총론 3조, 각론 7장 63항, 부록으로 조정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 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그 뒤

-
- 7) 녀자→여자, 니토→이토, 량심→양심, 료리→요리, 락원→낙원, 로인→노인, 부무→부모, 허낙→허락.
 - 8) 건느어(건너), 뜨이다(띄다), 가아서(가서), 오아(와), 그리어(그려), 아기야(약아), 가지고(갖고), 디디고(덜고), 나는(난), 그것을(그걸), 부지런하다(부지런충다, 부지럽다)
 - 9) 사람은, 가면서 노래한다, 먹어버린다, 열어보다, 갈바를, 할수가, 두자루, 네사람,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 10) 첫번째의 내용은 부록 표준어 제7.8항의 표준말 어휘 전부를 삭제하는 동시에 각 항의 용어와 예들을 사정한 표준말로써 적당히 수정.정리한 것이며, 두번째의 내용은 제19항에 있는 ‘후’를 ‘추’로 바꾸었으며(갖후다 갖추다, 맞춤법 맞춤법), 제30항에서 사이시옷을 중간에 모두 쓰도록 하였다(뒷간 뒤스간, 움집 움스집). 또, 제 29항의 문구를 수정하고 부록 부호를 증보.수정한 것이다.

1949년 10월 21일 문교부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각종 교과서에 적용되었다. 이는 총칙과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에서 낱말은 각각 띄어쓰되 토는 옷말에 붙여 쓰도록 명시하고 세칙에서는 18개의 항목을 두고 있다.

그 뒤 한글적용 준비의 하나로 필요한 국어 정서법의 재조정에 대하여 1969년 12월 16일 한글전용 연구위원회에서 1969년 11월 17일 국어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고된 한글표기법은 현행대로 하되 1970년도부터 종합적으로 연구한다’에 해당하는 현행 띄어 쓰기 및 문장 부호 사용법을 명시한 ‘한글 표기법’이 있었다. 띄어쓰기에서는 먼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띄어쓰기 규정을 보이고, 원칙과 그 실례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한글 맞춤법〉

이것은 1988년 1월 19일에 고시된 정서법으로 해방 이후 정부에서 마련한 최초의 것이다. 1970년 2월에 문교부 국어심의회에서 현행 맞춤법의 검토, 수정과 표준어의 재사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한글학회가 주관하고 기타 6개 국어연구학회가 합하여 ‘국어조사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회 안에 ‘한글 맞춤법 재심 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2년여에 걸친 審議, 검토 끝에 작성한 수정안을 1972년 11월 문교부에 提出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문교부에서는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 1979년 12월 문교부 ‘맞춤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교부는 이 개정안을 포함한 어문관계 사업을 학술원에 이관시켜 체계적인 研究, 檢討를 하게 하였다. 학술원에서는 이 사업을 推進하기 위하여 1982년 1월 인문과학부회 제2분과회 회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위원회를 構成하고 그 안에 ‘맞춤법 소위원회’를 두어 1979년안을 檢討, 修正하여 ‘맞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84년 말에 문교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는 어문관계 표기법, 즉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은 건국 후 초유의 주요 국책 어문사업인 만큼, 학계, 언론계 등 일반의 여론을 재수렴하여 국민적 合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意見을

4) 형태에 관한 것

종결형의 ‘이오’와 연결형의 ‘이요’를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ㅂ불규칙 용언에 있어서 ‘ㄷ-’, ‘ㅍ-’과 같은 단음절 어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ㅂ’이 ‘ㄷ’로 바뀌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ㄷ’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경우 형태를 밝혀 적는 쪽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복합어에서 사이시옷의 표기가 이전에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엔 모두 받침으로 쓰기로 했던 것을 제한하였다. 즉, 순 우리말로 된 것이나 한자어와 순 우리만이 합쳐진 경우에 한해 모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 받침으로 쓰도록 하였고, 한자어에서는 ‘곶간, 셋방, 숫자, 찻잔, 텃간, 횃수’만을 인정하였다. 또, ‘하’의 ‘ㅏ’가 준 경우에는 거센 소리로 적도록 하였다.

5) 띄어 쓰기

띄어 쓰도록 규정했던 의존명사나 보조용언은 그 뒷말에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고유명사의 표기는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 성과 이름은 붙여 쓸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수를 우리 글로 적을 때에는 만 單位로 띄어 쓰도록 하였다.

6) 그 밖의 것

부사화 접미사 ‘이, 히’의 구별에서 분명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고, 혼동될 경우는 ‘히’로 적도록 하였으며,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는 ‘(으)르 까, (으)르 꼬, (으)르 쏘냐’를 제외하고는 모두 ‘르’다음의 소리를 평음으로 적도록 하였다.

2.3. 북한의 정서법

〈조선어 신철자법〉

북한은 해방 직후 1948년 1월 15일에 「조선어 신철자법」을 公布하였다.

이는 1946년 7월(?)에 민간단체로 출발한 ‘조선어문연구회’에서 작성된 것이다. 북한은 통일안의 결함을 지적하여, 철저한 형태주의에 입각하여 새로 制定하였으니, 이는 종래의 표기법에 적지 않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한자어 표기, 합성어 표기, 용언의 활용 표기 등이다.

이 ‘조선어 신철자법’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통일안과 다른점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모의 순서와 명칭

새로운 문자 여섯()을 더하고 된소리 글자, 이중모음까지를 합쳐 모두 42자가 되었다¹³⁾. 그리고, 받침으로는 ‘ㄹ’을 ‘ ’으로 바꾸고 , , , , , 의 여섯을 더하여 34개로 늘어났다.

2) 첫소리 표기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에 있어 통일안에서 쓰지 않는 ‘ㄴ’, ‘ㄹ’을 쓰도록 하였다(녀자, 뇨도, 니토, 락원, 량심, 료금)

3) 중간소리 표기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 ’로 적도록 하였으나, 두 형태부 사이의 설측음은 따로 따로 ‘ㄹ’을 적도록 하였다(아라다락, 어른, 거레, 빠리, 홀로, 길로).

4) 복합어의 표기

통일안에서 모음으로 끝난 말 아래에만 사이시옷을 쓰도록 한 것을 앞말의 끝소리에 관계없이 모두 그 사이에 분리부 ‘,’를 쓰도록 하였다(기’발, 나루’배, 산’불, 콩’가루, 들’것, 날’숨, 한’자, 맹장’염, 대’앞, 물’약).

5) 어간과 어미

어간의 끝소리가 ‘하’인 경우만 어미 ‘여’로 쓰던 것을 확장하여 어간

13)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옥, 그) ㄴ(니은, 느) ㄷ(디은, 드) ㄹ(리을, 르) ㅁ(미음, 므) ㅂ(비읍, 브) ㅅ(시읏, 스) ㅇ(이응, 으) ㅈ(지읏, 즈) ㅊ(치읏, 츠) ㅋ(키읏, 크) ㅌ(티은, 트) ㅍ(피은, 프) ㅎ(히읏, 흐) ㆁ(끼읏, 그) ㆁ(띠, ㅌ) ㆁ(빼, ㅍ) ㆁ(씨읏, 쓰) ㆁ(찌, 쓰) (,) (,) (,) (,) 1(01, 반모음01) ㅏ(야) ㅑ(야) ㅓ(여)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ㅞ(애) ㅟ(애) ㅠ(에) ㅡ(에) ㅢ(외) ㅣ(위) ㅤ(의)

끝소리가 ‘1, l, H, ㅅ, ㅆ, ㅈ, ㅊ’인 경우에도 ‘여’로 적도록 하였고 불규칙 용언에 있어서 어간 형태부를 固定하기 위하여 신문자를 사용하여 표기상에서 그 형태를 고정시키고 있으며, 어간과 토의 구별을 위하여 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 어미는 어간의 받침으로 쓰지 않고 분리하고 있다¹⁴⁾.

6) 파생어 표기

통일안에서 형태를 밝혀 적지 않던 접미사들을 밝혀 적도록 하였다(붉웃 붉웃, 죽엄, 막암, 목아지, 집웅, 깃브다, 감았다, 간질어다).

7) 띄어 쓰기

특수조사는 띄어 쓰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격조사라 일컫는 것은 북한에서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붙여 쓰게 되나 특수조사는 單語로 認定하여 하나의 보조적 품사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품사 單位로 띄어 쓰도록 한 원칙을 두고 특수조사의 경우 붙여 씀을 허용하고 있다.

〈조선어 철자법〉

북한의 195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이 창설됨에 따라 ‘조선어 문연구회’는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로 개편되었고 1954년 9월 ‘조선어 철자법’을 制定. 公布하였다. 이 정서법은 1954년 초에 시작하여 4월에 草案은 作成하고, 2개월여의 토의를 거친 다음 공포되었는데 총칙과 본문 8장 56항으로 문장부호가 조문에 삽입되어 있다. 이는 이전의 신문자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削除됨으로써 통일안으로 다시 돌아가 자모의 규정과 세칙의 부분적인 사항만이 달라졌다. 이의 달라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칙

앞의 ‘조선어 신철자법’에 3개 조항이 더 추가되었다. 즉, 문장에서 단어는

14) ㅅ 1여, 기여, 개여, 베여, 되여, 쉬여, 회여, 퍼, 뛰, 따라, 따르 ㅏ, 노니 놀니, 이어 이어, 하야니 하얏니, 걸어 어, 가까와 가 아, 푸르다 푸 다, 푸르러 푸어, 흐르다 흐 다, 흘러 흐 , 익충 ㅏ, 바니다, 커다랗니.

띄어 쓴다는 것과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서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정한다는 것과 모든 문서는 가로쓰기를 한다는 것이다.

2)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

신문자 여섯이 삭제되고 쌍글자의 명칭이 ‘된기옥’식으로 바뀌어졌으며, ‘ㄴ, ㄷ, ㄹ, ㄴ’을 추가하여 모두 40자로 정하였다¹⁵. 그리고, 받침은 27개로 신문자 여섯을 삭제한 것이다.

3) 어간과 어미의 표기

불규칙 용언의 신문자표기를 모두 삭제하여 이전의 통일안식으로 되돌렸으며, 어미 ‘여’를 취하는 경우와 한자어의 어두음 ‘ㄹ, ㄴ’의 표기는 그대로 살리고 있다. 그리고, ‘(으)ㄹ, 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ㄹ’다음의 소리를 평음표기로 규정하였고, ‘하’의 ‘ㅏ’가 준 경우는 사이에 ‘ㅎ’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소리를 격음표기로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 한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어미는 원래대로 받침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4) 어근과 접미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적기로 한 ‘엄, 암, 아지, 응, 브다, 영/양다, 다’를 모두 소리대로 적도록 하였다.

5) 띄어쓰기

토는 모두 윗말에 붙여 쓰도록 하여 보조적 품사로 특수조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말규범집〉 (1966)

이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66년 6월에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制定한 것으로 ‘조선어 철자법’에 대한 개정이었으며, 북한에서 약 10년만에

15) ㄱ(기옥, 그) ㄴ(니은, 느) ㄷ(디은, 드) ㄹ(리을, 르) ㅁ(미음, 므) ㅂ(비읍, 브) ㅅ(시읏, 스) ㅇ(이응, 으) ㅈ(지읏, 즈) ㅊ(치읏, 츠) ㅋ(키읏, 크) ㅌ(티읏, 트) ㅍ(피은, 프) ㅎ(히은, 흐) ㅊ(된기옥, ㅊ) ㅄ(된디음, ㅄ) ㅅ(된비읍, ㅅ) ㅆ(된시읏, ㅆ) ㅈ(된지읏, ㅈ)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ㅞ(애) ㅟ(예) ㅚ(에) ㅜ(외) ㅟ(위) ㅞ(의) ㅟ(와) ㅞ(위) ㅟ(왜) ㅚ(웨)

이루어진 제3차 개정인 것이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부로 되어 있고 각기 총칙과 세칙의 여러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에 비해 띄어쓰기가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표준발음법이 더 확충되어 規範化된 것이다. ‘조선어 철자법’과 다른 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맞춤법은 총칙에서 제2-4조가 삭제되었고, ‘하’의 ‘ㅏ’가 준 것은 소리대로 적도록 하였고, 이전의 분리부''를 없앴다. 띄어쓰기는 붙여 쓰는 경향을 보인다.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 불완전 명사는 붙여쓰도록 하고, 수를 우리 글로 적을 때는 ‘(천), 만, 억, 조’단위별로 띄어 쓰며, 대명사는 불완전 명사와 어울린 것만 붙여 쓰도록 하고, 보조용언이나 녹아붙은 단어, 학술용어는 붙여 쓰도록 하였다.¹⁶⁾

〈조선말규범집〉 (1988)

이는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을 수정, 보충한 것이다. 내용이나 체제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나 내려쓰기가 독립하여 명시되어 있다. 달라진 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맞춤법에서는 총칙의 가로 쓰는 규정이 削除되었다. 이는 맨뒤의 내려쓰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복합어의 표기에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시옷을 쓴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빗바람 - 비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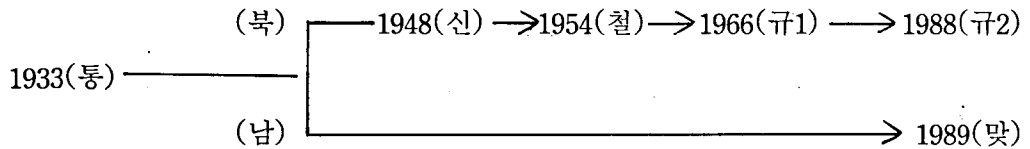
띄어쓰기에서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너무 붙여 쓰던 것을 일부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¹⁷⁾.

2.4. 요약

남북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서법은 그 출발에 있어서는 같았으나,

-
- 16) 사회주의 농촌, 새날협동농장, 한인선동무, 기술자자신, 말할나위, 회의중, 뜬소문, 93억 7천 258만 6천 365,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팔만 육천삼백예순다섯, 쓸어버리다, 읽고있다, 읽을가보다, 들을만하다, 모두다, 자나깨나, 다름아니라, 평의다리야재비.
- 17) 아침10시→아침 10시, 국기훈장제1급→국기훈장 제1급, 김장법. 황영순동무들→김장법. 황영순 동무들, 소형뜨락뜨르→소형 뜨락뜨르, 전국적적력소비실태자료→전국적 전력소비 실태자료, 93억 7천 258만 6천 365→93억 7천 2백 58만 6천 3백 65,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팔만 육천삼백예순다섯→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육천 삼백 육십오, 그렇지않다→그렇지 않다.

교류가 없이 각각 시행해 온 결과로 지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남북한 표기법이 변해 온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에서는 1933년의 통일안이 정부수립 후에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노릇을 하게 되어 사용되다가 1988년에 최초로 정부가 마련한 정서법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규정을 整備하고 規定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용상 遵守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1948년의 정서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기에 그 효용성은 없었으며 1954년의 정서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 후 1966년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대폭 수정하여 붙여쓰는 方向으로 되었고 1988년의 정서법에서는 이것이 다시 완화되었다.

남북한 정서법의 대원칙은 기본적으로 형태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보다 더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또 띄어쓰기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이의 조정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3.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 검토

이에 대한 남한의 규정은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그밖의 것으로 나뉘어 構成되어 있고, 북한의 규정은 총칙, 조선어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형태부의 적기, 말줄기와 토의 적기, 앞붙이와 말뿌리의 적기, 말뿌리와 뒤붙이(또는 일부 토)의 적기, 한자말의 적기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이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같지만, 체제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남한은 언어단위 가운데 하나인 음운을 따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단어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한자말의 적기를 별도로 規定하고 있어 고유어와 區別을 의식한 것 같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맞춤법을 比較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내고 적절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편의상 원칙, 자모, 형태소, 파생어, 합성어, 어간과 어미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¹⁾.

3.1. 원칙

이는 맞춤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로 되어있다. 이는 문맥상으로 근본원칙이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단서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표음주의가 우선이고 형태주의가 부차적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문맥상으로 근본원칙이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단서가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표음주의가 우선이고 형태주의가 부차적임을 의미한다.

북한은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1) 여기에서 어간이라 함은 용언의 어간은 물론 체언까지를 포함한 것이며, 어미라 함은 용언의 어미는 물론 조사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는 조사의 처리에 남북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것을 허용한다.”로 되어 있다. 이는 근본원칙이 형태소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가 되고, 소리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단서로 된다.

남북한이 명문화한 이 원칙을 비교하면 서로가 형태주의와 표음주의를 절충하여 규정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근본원칙에 있어서는 서로 바뀌어져 있다²⁾. 그러나, 내용 전반에 걸쳐 基準이 되는 것은 남북한 공히 형태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남북이 갈리기 전 ‘통일안’에서 이미 정착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에 차이가 없다 하겠으나, 이를 표현하는 데서 남한의 規定은 오해의 여지를 안고있다.

결국 원칙에 대한 명문화 규정은 표기상의 대원칙인 형태주의와 부차적으로 따르는 표음주의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자모

이는 맞춤법에 있어서 최소단위가 되는 글자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국어는 음소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절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글자의 개념에 대하여 혼란이 있다. 예를 들면, ‘형태소’란 말의 구성을 3자로 인식하거나, 7자로 인식하거나, 8자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3자로 본 것은 ‘형, 태, 소’의 각 음절을 하나로 인식한 것이고, 7자로 본 것은 ‘ㅎ, ㄱ, ㅏ, ㅓ, ㅓ, ㅣ, ㅓ, ㅓ’로 나눈 것이고, 8자로 본 것은 ‘ㅎ, ㄱ, ㅇ, ㅏ, ㅣ, ㅓ, ㅓ’로 분석하여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남북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남한)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2) “뜨거운 국물을 엮질렀다”를 예로 들면 남한은 먼저 ‘뜨거운 공무를 엮질렀다’에서 출발하며, 북한은 ‘뜨겁은 국물을 엮지르었다’에서 출발한다.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
(이)

[붙임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ㅍ(쌍기역) ㅑ(쌍디귤) ㅑ(쌍비읍) ㅑ(쌍시옷) ㅑ(쌍지읒) ㅑ(애) ㅑ(애)
ㅑ(예) ㅑ(예) ㅑ(와) ㅑ(왜) ㅑ(외) ㅑ(위) ㅑ(웨) ㅑ(위) ㅑ(의)

[붙임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애) ㅑ(애)
ㅑ(예) ㅑ(예) ㅑ(와) ㅑ(위) ㅑ(외) ㅑ(위) ㅑ(웨) ㅑ(위) ㅑ(의)

(북한)

제1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ㆁ(티읕) ㅍ(피읖) ㅎ(히읇)

ㅑ(된기읍) ㅑ(된디읇) ㅑ(된비읍) ㅑ(된시읏) ㅑ(된지읒)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ㅑ(애) ㅑ(애)
ㅑ(예) ㅑ(예) ㅑ(외) ㅑ(위) ㅑ(외) ㅑ(위) ㅑ(웨) ㅑ(웨)

자음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도 있다.

(ㄱ) (느) (드) (르) (므) (브) (스) (응) (즈) (츠) (크) (트) (프)
(호) (호) (뜨) (쁘) (쓰) (쯔)

위에서 보면 남북한의 차이는 자모의 수, 이름, 순서에서 다 나타난다.

자모의 수에 대하여 남한은 글자의 形態를 基準으로 하여 홑글자만을 인정하여 24자로 정한 반면, 북한은 겹글자까지를 한 글자로 보아 40자로 정하였다. 자모의 이름은 ‘ㄱ, ㄷ, ㅅ’에 대하여 익히기 쉽도록 한다는 것이 오랜 관용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래의 ‘기역, 디귤, 시읏’을

그대로 둔 반면, 북한은 일관되게 ‘기읍, 디은, 시웃’으로 統一하였다. 또, ‘ㄱ, ㅌ, ㅍ, ㅈ, ㅊ’에 대하여 남한은 홑글자만을 기본글자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쌍기역, 쌍디글, …’식으로 한 반면, 북한은 겹글자까지도 기본글자로 인정하고 소리를 基準으로 하였기 때문에 ‘된기읍, 된디은, …’식으로 하였다. 자모의 순서에 대하여 남한은 홑글자를 기준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귀납된 結果이지만, 북한은 겹글자까지도 기본글자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홑글자, 두겹글자, 세겹글자 순으로 적는 원칙을 적용하였고, ‘ㅇ’은 받침으로서만 그 자리를 인정하였다³⁾.

남북한의 이러한 차이는 각기 이론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에 의거하여 結果된 것인데, 이 두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狀態에서 그 통일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자모의 수에서 글자와 소리의 일대일 대응이 필연적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자는 소리를 표기하는 手段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제 음가를 제대로 표기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言語는 변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의 實現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글자의 기준은 소리와 聯關을 떠나 글자만의 형태를 보아 홑글자만을 기본글자의 단위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남한의 규정이 더 合理的이다.

자모의 이름은 재래의 작명원칙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기읍, 디은, 시웃’식으로 調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음 겹글자에 대해서는 소리를 배제하고 글자의 형태만을 고려한 남한의 규정이 일관성이 있다. 여기에 자음의 명칭에 대하여 북한에서처럼 ‘그, 느, 드, …’식을 명문화하는 것도 실용적인 면에서 필요하다. 모음의 명칭에서 겹글자의 이름은 글자만을 고려하면 ‘(아이), (야이), (어이), …’식이 합리적이겠으나 ‘까, 따, …’를 ‘(그그), (드드), …’식으로 하지 않았고, 현재 남북이 일치하므로 그대로 두어도 좋겠다.

3) 단어 > ‘하기’는 ‘…ㅎ ㄱ ㅌ ㅍ ㅈ ㅊ’ 다음의 ‘ㅈ’줄에서 찾아야 한다.

자모의 순서에는 문제가 많다. 글자의 형태를 基準한 것인 만큼 이에 의거하면 ㄱ-ㄴ 순으로 해야겠지만, 우리의 인식이 음절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용적인 면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성의 자음자가 전체의 順序를 정하고, 중성이나 종성의 글자는 부차적으로 認識되어진다. 이에 모음자는 자음자의 맨 뒤에서 글자의 형태나 음가만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 모음자는 ‘ㅇ’줄에 넣되 해당된 모음자의 맨앞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順序가 일단은 글자를 基準으로 한 것이지만 색인의 배열에 있어서는 소리단위로 하여 19개의 표제글자로 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이는 ‘ㄱ’줄과 ‘ㅋ’줄이 각립한 것처럼 ‘ㄴ’줄이 따로 자리를 잡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3.3. 형태소

이는 단어의 구성요소가 되는 최소의 의미단위인 형태소의 表記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표기원칙은 남북한 공히 총칙에서 밝힌 것처럼 그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가 적용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事項은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나 설측음 ‘ㄹ’의 소리, 받침소리, 한자음 등을 적는 경우이다.

이 사항 들에 관하여 된소리로 나는 일부의 경우와 한자음의 표기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서로가 일치한다.

된소리로 나는 경우의 표기에서 남북한은 같은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이다. 즉, 남한과 북한은 이 경우에 ‘(으)ㄹ’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어미들은 현재에 와서는 하나의 형태소로 굳은 것이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적어야 하나, 이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考慮하여 정한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疑問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소리대로 적게 하여 차이가 있다.

(남한)	(북한)
- (으)ㄹ 수 록	- ㄹ 수 록
- (으)ㄹ 지라도	- ㄹ 지라도
- 올시다	- 올시다
- (으)ㄹ 까	- ㄹ 가
- (으)ㄹ 쏘냐	- ㄹ 소냐
- (으)ㄹ 꼬	- ㄹ 고

남한에서 이러한 예외를 둔 것은 관용적으로 널리 익어진 것이기 때문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하였다. 여기에서 統一方案을 찾는다면 같은 경우의 대다수를 예외로 인정하면서 불과 몇개 안 되는 소수를 考慮하여 기능상의 차이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남한의 規定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남한의 이 조항에는 관계가 없는 ‘(스)ㄹ니까, (으)리까’도 의문어미라 하여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原則에서 자동적으로 된소리 표기로 되므로 調整은 어차피 필요하다.

다음은 한자음 표기인데,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자어는 국어에 침투하여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한자어를 이루는 음절 하나하나는 국어에 들어와서도 엄연한 형태소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한자 음절은 각기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되어있다⁴⁾. 그런데, 남한은 의존명사나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어두의 ‘ㄹ’이나 ‘니’소리, 모음이나 ‘ㄴ’뒤의 ‘렬, 률’소리가 나지 않음을 고려하여,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⁵⁾, 북한은 일부 한자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한자음은 어디에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⁶⁾. 또, 한자음의

4) ‘獨立, 申年, 段落’ 등을 ‘동립, 감년, 달락’으로 적지 않고 ‘독립, 감년, 단락’으로 적는 경우이다.
 5) 여자(女子), 익명(匿名), 내일(來日), 노인(老人), 자녀(子女), 수력(水力), 왕래(往來), 나열(羅列), 분열(分裂), 규율(規律), 선율(旋律)
 6) 궁냥, 나사, 나팔, 류월, 시월, 오뉴월, 요기, 국가, 녀자, 뇨소, 락원, 로동, 레의, 천리마.

모음에서 남한은 ‘계, 레, 메, 예, 폐, 헤’를 인정하여 그 형태를 밝히고 있으나, 북한은 ‘계, 레, 예, 헤’만을 인정하여 그 형태를 밝히고 ‘메, 폐’는 그 소리가 ‘메, 폐’로 바뀐 것으로 처리하여 표기까지 ‘메, 폐’로 적고 있다. 이는 이들 한자음의 발음이 현실적으로 단모음으로 발음된데 대하여 남한은 이를 표기에는 反映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일부를 表記에까지 반영한 것이다.

‘메, 폐’의 表記에 대해서 보면, 남한은 사람들의 인식이 ‘예’형으로 굳어진 점을 고려하여 현실발음이 ‘메, 폐’로 나더라도 표기에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두 음절은 국어에서 차지하는 빈도를 볼 때나 동음충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기하면 ‘예’형의 한자음 가운데 일부인 이 둘을 ‘예’형으로 적어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보아 調整할 수 있다고 본다.

어두의 한자음 표기를 보면, 원초적으로 두 가지의 극단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어에 들어온 漢字語를 서구외래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것이 국어의 단어체계 속에 들어온 상태를 하나의 자립어로 보고 이를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여 표기의 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고⁷⁾, 다른 하나는 한자어를 이루는 음절 하나하나를 형태소로 인정하여 표기의 원칙에 따라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⁸⁾.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현재 북한의 취하는 방식이다. 이 극단의 둘을 비교하면 남한은 절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남한에서 절충하는 方式을 택한 근거로는 國語의 특질 중의 하나인 두음법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두음법칙이 국어의 특질이라면 말음법칙, 자음접변도 국어의 특질에 들 수 있다. 이들은 國語에서 자동교체되는 현상이다. 즉,

녀자==>, 료리==>, 로인==>노인, 앞만==>임만, 붙는==>부는
 없다==>업따, 읽다==>익따, 읽는==>잉는, 젊다==>점따

7) 동립(獨立), 갑년(甲年), 단락(段落), 여자(女子).

8) 독립(獨立), 갑년(甲年), 단락(段落), 녀자(女子).

와, 같이 그 발음이 변한다. 따라서, 자동교체되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그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면, 두음법칙이 자동교체되는 현상이나 아니냐를 考慮할 필요가 있다. 자동교체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면 이른바 한자음의 변한 狀態를 적어야 하거나 속음으로 處理하여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⁹⁾. 自動交替되는 현상이라면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표기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어의 특질이라는 두음법칙이 자동교체되는 현상이라면 굳이 소리대로 적는 예외를 두지 않더라도 그 발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표기상에서 형태를 固定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통일방안을 考慮하면 남한의 규정을 調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절충을 위한 예외는 한자음의 변한 소리나 속음을 소리대로 적는 것으로 보완이 될 수 있다.

3.4. 파생어

여기에서는 접미사나 접두사가 결합된 형태를 적는 법을 규정한 것이다. 남북한 공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예외를 인정하여 그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느냐 하는 것이다.

접두사가 붙는 말은 남북한 모두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접미사가 붙는 말은 각각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소리대로 적는 두 경우를 分離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 남북한 공히 첫째,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가 될 때, 둘째,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될 때, 셋째,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될 때, 사동이나 피동, 강세접미사가 붙을 때, 넷째, ‘이다, 하다,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될 때, 다섯째,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을 때이며,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남북한 공히 첫째, ‘이, 음’이외의 접미사가 붙을 때, 둘째,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셋째, 본뜻에서 떨어진 단어로 될 때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에 차이가 없으나, 그 세부항목에 있어서 약간의

9) ‘한글 맞춤법’ 제52항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승낙(承諾), 수락(受諾), 분노(憤怒), 대로(大怒)등이다.

차이가 있으니,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부사가 될 때이다.

명사가 되는 경우 남한은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을 때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하였으나, 북한은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일 경우와 본딴말에 ‘이’가 붙을 때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¹⁰⁾.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의성, 의태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다’나 ‘거리다’ 중 어느것도 붙을 수 없는 것은 소리대로 적게하여¹¹⁾, 북한이 의성, 의태어이면 무조건 소리대로 적게 하는 것에 차이가 생기는데, 남한에서 더 형태를 밝혀 적게 되었다.

부사가 되는 경우 남한은 비록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일지라도 그것은 부사인 경우는 밝혀 적도록 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이 ‘하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일 때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¹²⁾.

이 경우에 남북한의 차이는 어느 쪽이 더 형태를 밝혀 적었느냐인데, 표기법의 대원칙에 의거하면 남한의 경우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3.5. 합성어

이는 두 어근 이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말이 만들어질 경우, 그 사이에서 소리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의 表記를 규정한 것이다. 이 때, 일어날 수 있는 소리의 變化는 앞말의 끝소리가 탈락되거나 다른 소리로 변한 경우¹³⁾, 앞 뒷말 사이에 다른 소리가 끼어 들어가는 경우인데¹⁴⁾, 전자에서는 남북한에 차이가 없다. 후자에서도 ‘ㅂ’이나 ‘ㅎ’소리가 덧날 때는 남북한의 表記가 같으나 ‘ㄴ’이 첨가되거나 뒷말이 된소리로 변할 때의 表記에는 차이가 있다.

이 경우 남한은 두 예외를 두었는데, 하나는 ‘이’[齒, 齒]가 다른 말과

10) 깔쭉기, 꿀꾸리, 더퍼리, 뺨쭉기, 살사리, 썩썩기, 오토기, 푸서기, 흘쭉기.

11) 깔죽이, 꿀꿀이, 더필이, 뺨죽이, 살살이, 썩썩이, 오통이, 푸석이, 흘쭉이.

12) 남한의 ‘일찍이, 더욱이’가 북한에서는 ‘일찌기, 더우기’로 표기된다.

13) 바느질, 소나무, 여닫이, 싸전, 우짚다, 화살, 반집고리, 사흔날, 손가락, 설달, 잘다랠다.

14) 줍쌀, 입쌀, 접때, 머리카락, 암개, 수닭.

결합될 때 소리대로 ‘니’로 적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잇소리의 표기인데 순 우리말이 들어있는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한해 ‘ㅅ’을 앞말에 받쳐 적도록 하고, 한자어인 경우는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만으로 정하였다¹⁵⁾. 북한은 동음어인 고유어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ㅅ’을 받쳐 적도록하고 있을 뿐 그외는 어떠한 표시나 글자를 더 추가하지 않고 있다¹⁶⁾.

이런 사잇소리의 현상에 대한 표기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살핀 경우와는 다른 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단어의 발음은 변함이 없이 형태의 표기만 정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발음까지도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 사잇소리의 첨가가 규칙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에 다룰 불규칙용언과 類似하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형태주의 原則에 입각하여 이 형태의 표기는 극단의 두 方法이 있다. 하나는 아무런 표시나 글자를 쓰지 않고 結合되는 형태소만을 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글자나 부호를 사용하여 이를 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북한이 원칙적으로 취하는 것이고, 후자는 역사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폐기되었다¹⁷⁾. 이의 절충방안으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만 ‘ㅅ’을 받침으로 적도록한 경우가 있다¹⁸⁾. 이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일반언중들 사이에 잘 통용되지 않아서 역시 폐기되었다. 그래서, 한자어의 경우는 제외시키는 안이 나왔는데 現代의 남한에 있는 規定이다.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고유어가 결합된 말이다. 한자어의 경우 남한이 정한 예외 여섯만을 제외시키면 한자어에 있어서 남북한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동음고유어에 한해서 북한은 표기의 區別을 두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므로, 남북한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의 남북한 規定을 크게 손대지 않고 절충하는 方法은 고유어가 앞말의

15) 간니, 덧니, 사랑니, 가랑니, 머릿니, 나룻배, 냇가, 아랫마을, 빗물, 뒷일, 나뭇잎, 사자밥, 자릿새, 제삿날, 훗날, 가윗일, 예삿일.

16) 셋별-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비바람(비와 바람), 바다가, 기발, 내물, 보름달, 밤이슬, 어금어.

위치에서 결합된 경우 그것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 한해 ‘ㅅ’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다. 한자어의 경우 ‘ㅅ’을 받쳐 적는 것이 일반언중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한자의 형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음절 밑에는 ‘ㅅ’을 받쳐 적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방안은 우선 남북한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면 불균형상의 문제가 뒤따른다. 그 어원이 한자어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것의 표기에서는 이의 적용이 망설여지는 規定이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의 어원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더 기계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극단의 두 가지이다. 그런데, 두 말 사이에 어떠한 부호나 글자를 쓰는 것은 하나의 단어형태로 의식하는데 거부감이 있다. 그렇다면, 아무런 표시없이 표기하는 것인데, 이는 발음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양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재 남한의 規定에도 자음으로 끝난 말이 결합될 때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면에서 보아 아무런 표시없이 표기하는 것도 일면 설득력이 있는 方法이다.

3.6. 어간과 어미

여기에서의 어간과 어미의 結合은 고정된 단어형태의 표기가 아니고, 문법적인 면에서 그 결합이 자유로우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이들의 형태를 각각 밝혀 적도록 규정하면서도, 소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소리대로 적도록 하였다. 이 경우는 불규칙활용이나 둘이 어울려 소리가 줄어들 적이다.

이 부분에서 남북한의 차이는 ‘ㅂ’불규칙과 ‘여’불규칙의 경우이고 ‘하다’의 ‘ㅏ’나 ‘ㅑ’가 줄 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맞춤법 이전의 표준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의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표기하면 될 뿐이다. ‘ㅂ’불규칙의 경우 남한은 어간 끝소리 ‘ㅂ’이 모음과 어울릴 적에는 모두 ‘우’로 바뀌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적도록 한 반면, 북한에서는 모음조화의 규칙을 인정하여 ‘ㅂ’이 ‘오’나 ‘우’로 변하는 것을 그대로 적도록

하고 있다¹⁹⁾. 또, ‘여’불규칙의 경우 남한에서는 어간 끝소리가 ‘하’인 경우에만 어미를 ‘여’로 적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간의 끝소리가 ‘ㄷ, ㅈ, ㅊ, ㅊ, ㅊ, ㅊ, ㅊ’인 경우에도 어미를 ‘여’로 적도록 하고 있다²⁰⁾. ‘하’의 ‘ㅏ’가 준 경우 남북한의 표기에는 차이가 없다.

‘ㅏ’불규칙의 경우 남북한의 차이는 母音調和 규칙을 적용시키느냐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현실 발음을 따르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언어는 변한다는 것과 규칙이 언어현상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조화 규칙이 국어 전체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변천에 따라 이의 파괴가 확연한 만큼 이 規則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 남한의 規定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불규칙의 경우 남북한의 차이는 변이형태를 표기상에 반영하느냐 한 하느냐이다. 여기에서 변이형태는 음운론적인 이형태로 자동교체되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쪽이 더 낫다. 그러나, 형태론적인 이형태는 그 변이형을 표기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適用은 지금까지에서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것이다. 물론 음운론적인 이형태라도 그 발음에 거리가 아주 먼 것은 소리대로 이형태를 적어야 한다.

‘하다’에서 어떤 소리가 준 경우에 남북한의 차이는 ‘하’음절 전체가 주는 것을 認定하느냐 아니 하느냐인데, 분명히 주는 경우라면 준 대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ㅏ’만이 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또, 이러한 환경에서 어휘마다 그 발음이

17) 1940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뒤스간, 움스집’으로 하였었고, 북한의 1954년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뒤’간, ‘움’집으로 하였었다.

18) 이에 따르면 원칙적인 표기는 ‘국엇과, 냇과, 총뭇과’ 등이 된다.

19) 남한에서는 ‘가까워, 반가워, 괴로워, 매워, 무거워, 구워, 쉬워, 미워, 고와, 도와’가 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가까와, 반가와, 괴로와, 매워, 무거워, 구워, 쉬워, 미워, 고와, 도와’가 된다.

20) 남한에서는 ‘기여, 개여, 배여, 되여, 쥐여, 회여, 하여’가 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기여, 개여, 배여, 되여, 쥐여, 회여, 하여’가 된다.

21) 남한에서는 ‘가타, 다정타, 발명케, 녀녀치 썩썩치, 깨끗지’가 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가타, 다정타, 발명케, 녀녀치, 썩썩치, 깨끗치’가 된다.

다를 때에는 일괄적으로 處理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다.

3.7. 요약

原則에 있어서 남북한이 형태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규정은 문맥상 표음주의를 근본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表現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모에 있어서는 그 수와 이름, 순서에 있어서 모두 차이가 나는데, 자모의 수는 글자의 形態를 基準으로 한 24자로 하고, 자모의 이름은 一貫되게 ‘기읍, 니은, 디을, …’식으로 統一하고 ‘쌍기읍, 쌍디을, …’식으로 글자의 형태를 基準하여 부르고, 실용상에 있어 ‘그, 느, 드, …’식의 이름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자모의 順序는 원칙적으로 글자를 基準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음절단위로 모아쓰는 면을 고려하여 소리단위로 19개의 표제글자로 하여 남한의 順序를 따르는 것이 좋다.

형태소의 표기에 있어 ‘(으)ㄹ’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않도록 하고, 한자음의 ‘메, 페’는 ‘메, 페’로 적어도 무방 하겠으며, 한자어의 어두음 表記는 한자의 본음을 적어 그 형태를 밝혀 적고, 변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도록 함으로써 頭音法則을 표기에까지 反映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어의 表記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대원칙의 精神에 맞게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남한의 규정이 더 일관된 면이 있다.

합성어의 표기는 사잇소리의 표기가 커다란 차이로 등장하는데, 현재의 상태에 크게 손대지 않은 範圍에서는 고유어가 앞말로 된 때에 한하여 그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만 ‘ㅅ’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 무난하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호나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어간과 어미가 結合될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ㅂ’, ‘여’ 불규칙의 경우와 ‘하다’의 ‘하’가 줄 경우인데, ‘ㅂ’ 불규칙의 경우는 모음조화 規則에

업매일 필요 없이 현실발음을 認定하여 ‘우’로 表記하는 것이 좋으며, ‘여’ 불규칙의 경우는 음운론적인 변이형태인 점을 고려하여 ‘하’ 이외에는 ‘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다’의 ‘하’가 완전히 준 경우에 한해 준 대로 적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 좋다.

4. 남북한 띄어쓰기의 비교 검토

남한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의 5개항의 規定을 개정하여 1989년 3월부터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에 4절 10개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의 제5장에 規定되어 있는 띄어쓰기에 대한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3절 보조용언

제4절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북한의 현행 띄어쓰기는 1988년에 수정된 「조선말 규범집」에 1개의 총칙과 5장 22개항으로 構成되어 있다. 「조선말 규범집」(1988)의 띄어쓰기는 별개의 분야로 獨立시켜 規정한 「조선말 규범집」(1966)의 세칙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펴낸 것이다. 따라서 「한글맞춤법」의 그것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規定되어 있는데, 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칙

제1장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4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5장 특수한 말, 특수한 어울림에서의 띄어쓰기

본 장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항목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기준, 체언류, 용언류, 수식어를 포함한 그 밖의 것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겠다. 이러한 檢討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남북한 정서법의 통일방안에서 띄어쓰기의 대안을 찾아 보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4.1. 원칙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목적은 문자생활에 있어서 야기될 혼란을 최소한으로 막으며 독서의 시각적 능률을 높이려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날말은 각각 띄어 쓰되 조사는 윗말에 붙이어 쓴다」라는 基準을 두고 있다. 근본원칙은 單語에 해당하는 날말은 띄어쓴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적인 단서로 문법적 기준에서 단어로 處理되는 조사는 붙여 쓴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조사도 단어로 認定하여 띄어써야 하되 단서를 달아 붙여 쓴다는 것이 「한글맞춤법」이 제시하는 띄어쓰기의 기준인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의 總則에서 제시하는 띄어쓰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선어의 글에서는 단어를 單位로 하여 띄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모를 소리마디 단위로 묶어쓰는 特性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쓰도록 한다’

근본원칙은 단어단위로 띄어쓰는 것이고, 단서로는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쓴다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의 그것과 比較할 때,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原則에서 같아 보인다. 그러나 單語에 대한 개념규정에서 「조선문화어문법」(1979 : 169-170)은 단어를 일정한 말소리에 싸인 뜻의 덩어리로서, 문장을 짜는데 쓰이는 言語의 기초단계로 보고 있다¹⁾. 이러한 「조선문화어문법」에서 열거한 단어의

1) 그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단어는 일정한 말소리에 싸여 있다.

둘째, 단어는 일정한 뜻을 가진다.

셋째로 단어는 문장을 짜서 어떤사상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데 쓰이기 위하여 존재한다.

몇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성구나 단어들의 군은 맞물림 등과 구별되며 또한 형태부와도 구별된다. 성구는 속어를 말하는 것이며 ‘단어들의 군은 맞물림’은 남한의 복합어와 관용적으로 어근과 어근을 겹쳐서 형성한 단어인 반면에 북한의 ‘단어들의 군은 맞물림’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태부는 단어가 짜이는데 참가하는 작은 뜻덩이를 문법적인 견지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일정한 문법적 특성을 가지도록 단어를 형태지어 주는 단어의 부분적 요소라는 뜻이다. 형태부는 단어를 이루는데 어떻게 참가하는가에 따라 말뿌리, 앞붙이, 뒤붙이, 토로 나뉜다. 남한의 용어와 비교해서 말뿌리는 語根과 같고, 앞붙이는 接頭辭, 뒤붙이는 接尾辭, 토는 助詞와 語尾를 포함한 것과 같은 말이다.

개념에 입각할 때 단어의 範疇에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단어에 대한 정의는 언어형식에 대한 자립형식과 구속형식의 구분을 土臺로 단어를 最少自立形式으로 보는 見解를 취하고 있으며²⁾, 단어에 조사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 할 지라도 「한글맞춤법」에서 정의한 단어와 「조선말규범집」에서 정의한 단어가 概念을 달리하여 이해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이 띄어쓰기의 原則에 대해 제시하는 단서의 內容도 다르다.

남한은 단어의 범주에 조사가 포함되어 띄어 써야하는 原則에 대해 예외를 두어 조사만 붙여쓴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 쓴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데, 이때의 특수한 어휘부류에 대하여 「조선말규범집해설」(1971 : 89)에서는 자립성이 없는 불완전명사와 같은 말을 일반적인 단어의 부류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붙여 쓰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띄어쓰기에 대한 基準을 比較할 때, 단어에 토를 제외시키고, 자립성이 없는 말과, 보조적인 구실을 하는 말, 그리고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두 개 이상의 단어라 할 지라도 붙여쓴다는 북한의 基準은 자연히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경향으로 나가게 만든다. 이와 달리 남한은 單語의 範圍에 조사와 보조용언, 의존명사와 같은 의존형태소를 포함시키고 그 단어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만을 붙여쓴다는 基準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히 띄어쓰기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한의 原則을 비교한 결과, 겉으로 보기에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쓴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단어에 대한 概念, 범위설정

2) L.Bloomfield(1933)에서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로서 형태소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 한 형태소는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지고 한 단어는 하나 이상의 최소자립형식인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최소자립형식의 분류기준으로

국어의 조사를 포함한 접사, 어미가 단어에 해당되는데 문법적 직능을 드러내는 것은 조사만 해당되므로 이러한 이론에 힘입어 남한은 조사를 단어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제와 원칙에 대해서 예외적인 단서의 차이를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원칙의 運用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단어에 대한 개념조정과 예외적인 단서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는 어휘의미적 기능과 문법적 기능의 둘 다에 대한 수행여부를 基準으로 복합어에 대한 띄어쓰기를 規定하거나 일반대중의 便宜를 존중하는 方向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4.2. 체언류의 띄어쓰기 비교 검토

체언류에 대한 검토에서는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다.

체언류와 관련지어 「한글 맞춤법」은 제42항에서 의존명사, 제43항에서 단위표시명사, 제44항에서 수사의 복합어 표시, 제48항과 제49항에서 고유명사에 대해 「조선말 규범집」의 그것보다 간략하게 規定하고 있다.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그러나 이러한 간략한 規定이 「조선말규범집」의 복잡한 조항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原則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그 속에서 유지되는 일관된 논리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와 같이 문법 기능만을 갖춘 의존형태소를 單語에 포함시키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의존명사도 단어로 인정하여 띄어쓰게 되고, 위와 같이 順序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예외적인 조항을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單語의 分類基準이 자립형태소이어야 하고 그 자립형태소는 어휘의미적인 기능과 문법적인 機能을 갖춘 형태소이어야 한다는 단어의 분류체계속에서는 의존명사가 단어로 취급될 수 없다. 따라서 의존명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현재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이 간결해지고 原則이 일관될 것이다.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를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신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原則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제1장 제3항에서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불완전명사, 제2장 제7항에서 수사와 단위표시 명사, 제2장 제5항부터 제7항을 제외한 제9항까지 수사와 대명사, 제1장 제2항에서는 명사와 고유명사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세밀함이 정서법의 순수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 理解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서법은 어느 정도 엄밀하게 할 필요는 있으나 사용하는 대중들의 便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간결한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말규범집」은 너무 많은 예외조항과 조목들로 이루어져있다. 예외가 많다는 것은 일관된 原則에 立脚해 조항을 設定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되는데, 그럴 경우 빠른 시간에 띄어쓰기의 원칙 속에서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마저도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체계가 번거로워진다. 먼저 불완전명사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제3항.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어쓰는 것으로 調節한다.

1) 순수한 불완전명사는 앞단어가 어떤 品詞이건, 어떤 형태에 놓여 있건 언제나 그것에 붙여쓴다³⁾.

3) 「조선말규범집」(1988)에서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분, 닷, 것, 나위, 녀, 지, 때문, 리, 번, 양’

2) <<상, 중, 간, 판 경, 향, 측, 장, 조, 전, 편, 산, 호, 성, 하, 전, 후, 내, 외, 차, 초, 말, 발, 착, 행, 년, 부, 별, 용, 분, 과, 급, 당, 기, 계, 래, 형, 제, 식, 상(모양), 적>>등과 같은 한자말이나 불완전명사와 <<뒤붙이적 單語는 그 앞단위에 붙여쓰며 그 뒤에 오는 단위는 띄여쓴다⁴⁾>>

3) 시간과 공간의 뜻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고유어명사 <<앞, 옆, 뒤, 끝, 속, 밖, 안, 우, 아래, 밑, 사이(새), 때, 제, 결, 길, 군데, 해, 달, 날, 낮, 밤, 곳, 자리, 고장, 어간, 어구, 가운데, 구석>> 등은 토없는 명사, 수사, 대명사 뒤에서 붙여쓰며 일부경우에는 규정형뒤에서도 붙여쓴다⁵⁾.

4) <<등, 대, 검, 따위>>와 같은 불완전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여쓴다⁶⁾.

「조선말규범집」에서는 일반적인 單語의 範圍는 불완전명사와 같이 어휘의미가 추상화되어 있는 의존형태소를 제외시키면서 불완전명사는 앞의 단어에 붙여 쓰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제1장 제3항 1조와 4조의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항목에 제시하는 이렇게 많은 불완전명사의 목록을 일일이 외우도록 일반대중의 문자생활에 강요하는 것은 정서법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남한에서 접미사로 처리되는 것들이다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는 뒤에 오는 단어들과 붙여서 ‘시간상제약’, ‘올해초기후변도’와 같이 붙여썼는데 「조선말규범집」(1988)에서 수정된 것으로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시간상 제약을 받는다 -올해초 기후변동은 매우 심했다.
-학교내 위생환경을 변혁 -대사급 외교관계

5) -학교앞에, 인민대중속에, 대문밖에, 사는곳, 실사이 등과 같은 예들이 있다. <년, 놉, 녀석, 자>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며, 이들과 어울리는 ‘들’은 뒤붙이(접미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다른 단어의 앞뒤에 오면서 자립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띄여 쓴다.(-앞 키 큰 사람, 밤 10시, 뒤 련합부대)

6) -김나리 등이 이겼다, -의과대학 대 체육대학 축구경기, -공중 대 지상 화력 시험훈련, -대학교원 검 공장기사, -사과, 배, 감 따위의 과일이 많다고 같은 예에서는 띄어쓰나 <대>, <따위>가 다른 단어와 어울려 하나의 덩어리로 됨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쓴다. (-지대공유도탄, 지대지미사일, 이따위짓, 그따위놈, 제따위)

따라서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는 이 의존명사의 항목은 남한과 북한의 띄어쓰기에 대한 원칙이 조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1) 순수한 불완전명사의 항목은 조정될 原則에 依據해 붙여 쓰도록 한다.
- (2) 2조는 접미사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굳이 規定에서 논하지 않아도 無妨할 것이다.
- (3)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되는 자립형태소이므로 규정에서 삭제되어 띄어쓰도록 한다.

수의 표기에서 「한글맞춤법」은 만단위로 表示하는데 이는 우리의 수개념이 만, 백만, 천만과 같이 만단위이므로 예전의 십진법의 의거한 띄어쓰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말규범집」의 수표기는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意味에서 붙여쓰는 방향이 수정이 필요하다.

불완전명사와 수사. 대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한 조항은 띄어쓰기 原則에 입각한 論理로 볼 때,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설명이다. 또한 단어의 範圍에 대한 원칙이 조정되면 현재의 조항에서 보이는 남북한의 사소한 차이는 해소된다. 수사와 대명사가 하나의 어근이 되어 부사인 복합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말의 造語法體系 안에서 설명되는 부분으로서 굳이 조항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남북한의 현행체계 안에서 설명된다.

제1장 제2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單位로 띄여쓴다.

복합명사에 관한 「조선말규범집」에서의 이들 조항은 명사가 토 없이 어울렸을 때 ‘하나의 개념을 가진 대상으로 묶여지는 경우 철저히 붙여쓸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對象으로 묶는 基準은 言語 사용자 개개인의 直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다. 제2항5조의 다음의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 장성속도 시위’라는 예에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개념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붙여 써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띄어쓰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어휘가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의

判斷 역시 주관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앞명사를 다시 받는다고 인정되는 《자신, 자체, 전부, 전원, 일행, 일가, 일동, 일체, 모두…》등은 그 앞단위에 붙여쓴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을 묶어 쓰는데 너무 집착한 결과로서 단어별로 띄어쓰는 原則의 체계를 손상시킨 경우라고 본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상 단위별로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말규범집」의 이 조항들은 「한글맞춤법」의 붙여쓰기 精神과 原則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고유명사와 관련한 「조선말규범집」의 띄어쓰기 조항¹⁰⁾은 「한글맞춤법」의 제49항의 單語별로 띄어쓰되 단위별로 붙여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허용규정에 의해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말규범집」은 「한글맞춤법」의 띄어쓰는 결과를 포괄하지 못하면서도 다양한 모든 쓰임을 일일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두 글자의 성을 붙일 때 성과 이름을 잘 구분 못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런 점에서 「한글맞춤법」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3) 칭호 직명 등이 뒤에 올적에는 그것을 앞에 붙인다.

(예 ; 김철수동지, 옥희아주머니, 리수복영웅)

「조선말규범집」의 고유명사에서 이름과 직명을 붙여쓰도록 규정한 것은 하나의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붙여 쓴다는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原則에 너무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름과 직명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띄어쓴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의거하면 「한글맞춤법」과 부분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4) 나란히 어울린것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위가 온경우

(1) 자립적으로 쓰이면서 두 단위에 각각 공통적으로 걸리는 單位는 모든 경우에 띄어쓴다.

(예 ; -해주와 사리원 지방,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

(2) 다른 명사의 앞에서 그것과 붙여서 쓰는 <<국체, 선진, 원시, 원생, …>> 등이 공통적인것의 앞에 올 때는 띄여쓴다.

(예 ; -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 선진 기술과 이론, 원시 유적과 유물, 원생 식물과 동물)

(3) 반점(.)과 같은 부호를 찍어서 명사들이 연결된 경우에는 앞뒤에 오는 공통적 단위는 띄여쓴다.

위에 있는 띄어쓰기의 조항은 단위별로 붙여 쓰는 기준 밑에서 구문적 重意性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잡한 조항으로 말미암아 정서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대중적인 편의가 무시되지 않는 정도로 수렴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살펴 본 체언류의 띄어쓰기에서 「조선말 규범집」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原則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이상의 語彙나 단어라 할지라고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덩이로 보아 붙여 쓰는 것이다. 체언류의 띄어쓰기에서 남북한이 보이는 차이는 部分的인 例外는 있으나 단어로 認定되는 낱말은 그대로 띄어 쓰려는 「한글맞춤법」의 見解와, 같은 개념을 드러내는 어휘들은 붙여서 표기하려는 「조선말 규범집」의 견해차에 그 원인 있다.

4.3. 용언류

「한글맞춤법」에서의 용언에 대한 規定은 합성동사나 합성형용사, 동사나 형용사를 하나의 單語로 보는 일반적인 원칙 때문에 별도의 항목에서 규정하지 않으면서 單語를 基準으로 띄어 쓴다는 原則의 체계의 포괄을 시켰다. 따라서 제3절 제47항에서는 보조용언에 대한 항목의 설명으로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쓰를 原則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쓰도 허용하고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체를 한다.

남한은 보조용언에 대해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위의 항은 보조용언을 單語로 규정하여 띄어쓰는 原則에 토대로 둔 것이다. 즉 어미 ‘-아, 어’나 ‘-ㄴ, -ㄹ’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 ‘-간다, -낸다, -드린다, -버렸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싶다, -척한다...’와 같은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붙여 씀도 허용하고 있다. 단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제3장이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인데, 보조용언으로 分類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어미‘-지’가 아닌 다른 어미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은 붙여 쓰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용언이나 행동의 단위가 잇달아 있을 때는 자립적인 행동의 單位를 基準으로 하여 ‘기여넘어가 살펴보다’, ‘들어가 집어올리다’, ‘만나보아 알고 있다’, ‘받아안아 덮어쌓다’로 띄어 쓴다.

용언에 관한 「조선말규범집」의 조항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는 접미사들의 체계까지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결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복잡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단위를 설정하였으므로 병렬적인 연결을 보이는 동사는 띄어쓰지만 모든 보조동사는 토가 있어도 띄어쓰지

않는다. 또 토 《나, 디, 고, 도, ㄴ...》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동사나 형용사가 겹친 것은 붙여 쓰고 그밖의 형태의 합친말이나 겹친말도 이에 준하여 붙여쓴다.

제11항과 제12항은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명사나 부사와 결합되어 용언을 형성하는 예로 들면서 붙여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언류에 대한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의 규정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물론, 단어를 단위로 띄어쓴다는 남북한의 띄어쓰기 원칙에서 보조용언을 단어로 보는 남한의 견해와 일반적인 단어로 보지 않는 북한의 견해가 차이가 있으나 남한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는 남한과 북한이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1항5조의 ‘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와 어울려 잇달아있는 경우에는 행동의 단위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해 ‘투쟁해나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었다’ 식의 지나친 붙여쓰기를 보이고 있다. 이점은 낱말이 가리키는 개념중심으로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基準에 입각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기준 이른바 단어 중심의 띄어쓰기로 수정할 부분이다.

요컨대, 용언류의 띄어쓰기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조선말 규범집」의 원칙은 행동의 單位에 따라 띄어쓰려는 경향이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 접사로 분류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항목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간결하여야 할 정서법의 체계를 익히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原則體系 안에서 설명되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서 보이는 차이는 「한글 맞춤법」의 예외의 허용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4.4 그밖의 것

그 밖의 것에 대한 비교 검토는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전문용어를

檢討의 대상으로 하겠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 원칙에 의해 쓰고 있다. 그러나 제46항에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좀더 큰것’, ‘한잎 두잎’과 같은 띄어쓰기가 허용된다. 또한 접두사로 인정되는 것들은 붙여쓰도록 하여 ‘맨-, 첫-, 새-…」등과 같은 것들은 붙여서 ‘맨손’, ‘맨주먹’, ‘첫눈’, ‘새신발’, ‘새색시’ 등으로 쓴다.

「조선말 규범집」에서의 수식어와 관련된 띄어쓰기를 規定한 項目은 제4장인데 관형사와 부사를 하나의 單語로 인정하여 띄어쓴다는 점에서 「한글 맞춤법」의 그것과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1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어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쓴다”는 조항으로 잇달아 쓰는 경우 ‘더욱더, 모두다, 한층더, 아닌게 아니라’와 같이 붙여쓰며, 두개이상의 서로 다른 품사가 부사어를 형성하게 된 경우도 ‘다시말하여’, ‘늦은 가을에’와 같이 붙여 쓰고 있다.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에서 보이는 수식어에서의 이러한 차이 역시 「조선말 규범집」이 單語의 형태소 경계보다는 하나의 개념이나 대상의 지시 여부에 띄어쓰기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의 전문용어나 학술용어의 띄어쓰기 조항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붙여쓰기를 허용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모두를 올바른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 규범집」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規定하고 있다.

첫째,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품사소속과 형태에는 관계없이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규정어, 보어, 상황어로서의 구획이 뚜렷한 대상이 이름은 원칙적으로 그 규정어, 보어, 상황어 단위로 띄어쓴다.

「조선말 규범집」의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이와 같은 세부원칙은 그동안 언어정책적으로 지속시켜 온 ‘문화어운동’의 特性을 보이는 것으로 전문용어의 외국어차용을 기피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의 원칙은 「조선말 규범집」(1966)의 띄어쓰기 조항에서부터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두번째의 것은 새로 개정된 「조선말 규범집」에서 추가 된 것이다. 전문용어를 새로 만들 때 용어의 조어법적인 통사특성을 띄어쓰기에 反映해보겠다는 意圖가 엿보이는 원칙이지만 적용된 예들을 볼 때, ‘민바다’나 ‘민거리수송대’, ‘굳은잎나무’, ‘팽의 밥풀’과 같은 예들도 두번째 원칙에 따라 띄어 쓸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한글맞춤법」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둠으로써 「조선말규범집」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되었다.

4.5. 요약

이상과 같이 「한글맞춤법」과 「조선말규범집」의 띄어쓰기를 원칙, 체언류, 용언류, 그밖의 것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원칙을 비교 檢討한 결과 단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예외적인 단서가 달랐고 그 결과 세부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한 차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의 調整이 필요하다.

(1)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태소만으로 범주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은 띄어쓰기 원칙의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또는 현상을 지시하는 말들은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추구하는 일반대중의 便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체언류에 대한 檢討에서는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었는데 남한에서 의존명사를 單語로 분류하는 現在의

「한글맞춤법」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이 간결해지고 원칙이 일관될 것이다.

셋째,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배1장 제3항 1조와 4조의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는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목수정이 불가피하다.

넷째, 복합명사에 관한 「조선말규범집」에서의 조항은 「한글맞춤법」의 붙여쓰기 精神과 原則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따라서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방향에서 「조선말규범집」은 만단위로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유명사에 관련한 「조선말규범집」의 띄어쓰기 조항은 「한글맞춤법」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용언을 檢討한 결과 「한글맞춤법」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는 남한과 북한이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용언에 관련한 조항은 간결해 져야 한다.

여덟째, 「조선말 규범집」에서 제1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어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 쓴다”는 조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에 입각해 띄어 써야 한다.

아홉째,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한글맞춤법」에서 단어별로 띄어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둬으로써 「조선말규범집」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되었다.

5. 맺음말

한 언어 공동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서법이 상존함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더구나 이것이 40여년의 단절로 인하여 생긴 결과이고 보면 이들의 통일에 대한 노력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내용을 정밀히 고찰하여 그 실상과 벌어진 틈을 찾아내서 수정과 조정 및 보완을 통하여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서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1933년의 통일안이 정부수립 후에 불문율로 나라의 정서법노릇을 하게 되어 사용되다가 1988년에 최초로 정부가 마련한 정서법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현재에 와서 불필요한 規定을 정비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용상 준수되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4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1948년의 정서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적용한 것이기에 그 효용성은 없었으며 1954년의 정서법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이는 자모의규정과 단어의 형태표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1966년의 정서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대폭 수정하여 붙여쓰는 방향으로 되었고 1988년의 정서법에서는 이것이 다시 완화되었다.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검토하여 서로의 차이점을 살피고 그의 통일방안을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남북한 정서법의 대원칙은 基本的으로 形態主義에 立脚하여 있으므로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이의 조정이 문제가 된다. 또 띄어쓰기에서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이의 조정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원칙에 있어서 남북한이 형태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규정은 문맥상 표음주의를 근본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모에 있어서는 그 수와 이름, 순서에 있어서 모두 이가 나는게, 자모의 수는 글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 24자로 하고, 자모의 이름은 일관되게 ‘기읍, 니은, 디은’ 식으로 통일하고 ‘쌍기읍, 쌍디은’ 식으로 글자의 형태를 기준하여 부르고, 실용상에 있어서 ‘그, 느, 드’식의 이름도 명문화해 둘 필요가 있다. 자모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음절단위로 모아쓰는 면을 고려하여 소리단위로 19개의 표제글자로 하여 남한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형태소의 표기에 있어 ‘(으)ㄹ’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않도록 하고, 한자음의 ‘떼, 페’는 ‘메, 페’로 적어도 무방하겠으며, 한자어의 어두음 표기는 한자의 본음을 적어 그 형태를 밝혀 적고, 변한 소리는 소리대로 적도록 함으로써 두음법칙을 표기에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파생어의 표기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대원칙의 정신에 맞게 그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남한의 규정이 더 일관된 면이 있다.

합성어의 표기는 사잇소리의 표기가 커다란 차이로 등장하는데, 현재의 상태에 크게 손대지 않은 범위에서는 고유어가 앞말로 된 때에 한하여 그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만 ‘ㅅ’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 무난하나, 전체적인 불균형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호나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될 때의 표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ㅂ’, ‘여’ 불규칙의 경우와 ‘하다’의 ‘하’가 줄 경우인데, ‘ㅂ’ 불규칙의 경우는 모음조화 규칙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현실발음을 인정하여 ‘우’로 표기하는 것이 좋으며, ‘여’ 불규칙의 경우는 음운론적인 변이행태인 점을 고려하여 ‘하’ 이외에는 ‘어’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다’의 ‘하’가 완전히 준경우에 한해 준대로 적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남북한의 띄어쓰기를 원칙, 체언류, 용언류,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첫째, 원칙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단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설정의 문제, 원칙을 적용하는데 따른 예외적인 단서가 달랐고 그 결과 세부항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원칙의 조정이 필요하다.

(1) 남한에서는 단어의 범주에 조사를 넣어 품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태소만으로 범주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은 띄어쓰기 원칙의 단서조항으로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 또는 현상을 지시하는 말들은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맞춤법」에서 추구하는 일반대중의 편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체언류에 대한 검토에서는 의존명사, 단위표시 명사, 수사, 고유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가 대상이었는데 남한에서 의존명사를 단어로 분류하는 현재의 「한글맞춤법」의 체계가 조정되면, 그러한 예외조항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조항이 간결해지고 원칙이 일관될 것이다.

셋째, 「조선말규범집」에서는 제1장 제3항 1조와 4조의 순수한 불완전명사로 분류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2조는 접미사로, 3조는 일반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자립형태소들로서 불완전명사에 소속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따라서 항목수정이 불가피하다.

넷째, 복합명사에 관한 「조선말규범집」에서의 조항은 「한글맞춤법」의 붙여쓰기 정신과 원칙의 체계 안에서 포괄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인 수개념을 살리는 방향에서 「조선말규범집」은 만단위로 붙여쓰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유명사에 관련한 「조선말규범집」의 띄어쓰기 조항은 「한글맞춤법」이 훨씬 간결하면서 일관된 규정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용언을 검토한 결과 「한글맞춤법」이 보조용언을 붙여쓰도록 하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고, 북한에서 대부분 붙여쓰도록 하는 말들이 남한에서 접사로 분류되는 것들이므로 용언에 대한 띄어 쓰기는 남한과 북한이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용언에 관련한 조항은 간결해져야 한다.

여덟째, 「조선말 규범집」에서 제14항 “부사는 기본적으로 띄여쓰되 특수한 경우에 조절하여 붙여쓴다”는 조항은 띄어쓰기의 원칙에 입각해 띄어 써야 한다.

아홉째, 학술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띄어쓰기의 문제는 「조선말규범집」의 항목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글맞춤법」에서 단어별로 띄어 쓰나 붙여 쓸 수도 있다는 허용조항을 둬으로써 「조선말규범집」과의 차이를 없애고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

남북한의 정서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비교 檢討하였다. 정서법의 대원칙에 흐르는 형태주의와 단어별 띄어쓰기는 서로의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따르되 어느 정도의 예외를 두느냐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예외규정에 대한 考察이 결국은 남북한 정서법 통일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실용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간략하게 일관된 규정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예외가 될 수 있는 한 적은 쪽으로 귀일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고영근(1988), “南北韓 言語 文字의 異質化와 그 克服方案”(1), 〈周時學報〉
2.
- , “북한의 문법 연구”, 〈국어생활〉 15, 국어연구소.
- , “북한의 문법 용어”, 〈말과 글〉38, 한국교열기자회.
- , “우리말 연구·조사는 우리 세대의 과제입니다”, 월간 〈사회와 사상〉 3월호
- , “북한의 초기 철자법과 문법 연구”, 〈정신문화연구〉36,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 “南北韓 言語·文字의 異質化와 그 克服方案”(2), 〈周時經學報〉
3.
-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화 연구소(1954), “조선어 철자법”, 평양: 과학원 출판사
- 국어연구소(1988), “국어생활” 13호, 서울: 국어연구소.
- 김민수(1972), “北韓의 言語政策”, (亞細亞研究) XV-4.
- (1985), 〈國語政策論〉 서울: 塔出版社.
- (1985), 〈北韓의 國語研究〉, 고려대 출판부.
- (1989), 〈北韓의 國語研究〉(증보판), 일조각.
- (1989), 서평: 〈조선문화어문법〉(1979), 〈周時經學報〉3.
- 김영배(1988), “문화어의 음운현상”, 〈국어생활〉15, 국어연구소.
- 김하수(1986), “남의 한국말과 북의 조선말”, 연세 매지 일곱번째, 연세대매지 캠퍼스.
- 김홍수(1989), “북한어의 성격과 관련된 몇 문제”, 제효 이용조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 김희숙(1984), “北韓言語正策研究”, <어문논총>3, 청주대 국문과.
- 남기심(1988), 서평: 최정후(1983) <조선어학개론>, <周時經學報>2.
-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 _____ (1988), “조선말규범집”, 평양: 사회과학원 출판사.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 “《조선말규범집》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송기중(1988),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생활>15, 국어연구소.
- 신창순(1980), “北韓文學의 批判”, <통일논총>2, 부산대.
- _____ (1986), “北韓 ‘문화어문법’ 檢討”, 유목상 외(편) <國語學新研究>, 탑출판사.
- 신현숙(1988), “로동신문을 통해서 본 북한의 언어 실상”, <한글>200.
- 심재기(1988), “문화어와 말다듬기”, <국어생활>15, 국어연구소.
- _____ (1988), 서평: 최완호. 문영호(1980) <조선어어휘론연구>, <周時經學報>2.
- 이현복(1977), “南北 言語正策의 變遷”, <통일정책>3-3.
- 장장명(1958), “조선어 철자법 해설(교원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전수태(1988), “북한 문화어의 한자어와 외래어”, <국어생활>15, 국어연구소.
- 전수태. 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비교>, 도서출판 녹진.
- 전재연(1985), “南北韓語彙形態의 比較 分析”, <北韓>10월호.
- 조선어문연구회(1949), “조선어문법”, 평양: 조선어말연구회.
- _____ (1949, 1951), “조선어연구”(제1권1-7호, 제2권1호), 평양: 조선어문연구회.
-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한글학회.
- 최호철(1988), “북한의 맞춤법”, <국어생활>15, 국어연구소.
- 홍연숙(1977), <남북한의 언어 개념의 이질화 연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_____ (1981), <南北韓이 言語文化 比較>, 통일문고3,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국어연구소(1989), <남북한의 언어 차이조사>(1. 발음. 맞춤법편).
- _____ (1989), <남북한 언어 차이조사>(2. 고유어편).

극동문제연구소(1973), 〈北韓言語政策資料集〉.

북한언어연구회(공편) (1988), 〈북한의 어학혁명〉, 도서출판 白衣.

중앙정보부(1973), 〈北韓 ‘말다듬기’ 資料集〉.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서울: 한글학회.

Han, Young-Hie(1980), “Language Policies and their Effect in South and North Korea” *Linguistic Journal of Korea* 5-2.

Kim, Jin-Woo(1974=1979), “Linguistics and Language Policy in North Korea”, *Koren Studies* 2.

Kim, Jin-Woo(1977), “Divergence in Language Policies in Korea”,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Horn Beam Press.

King, R. (1983), *Language Policy in North Korea: Kim Il Sung and the “Cultured Language” since 1978*, Yale University(mimeo).

Sasse, W. (1979a), “Dialect Studies in North Korea”, 제1회 국제한국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 (1979b), “The Cultured Language: Implementation of a Policy in North Korea”, *Korean Linguistics* 2.

_____ (1979c), “North Korea Language Policy since the Division of Korea”, *Koreanische Studien* 4-1.

南北韓 言語의 統一을 위한 研究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제1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 순 문

인쇄소 : 대우인쇄(주)

(非 賣 品)

